

대전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17488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성권, 전영훈, 조원균, 고경선

피 고 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써밋 담당변호사 박장수, 조정훈, 박

재완

변 론 종 결 2021. 11. 4.

판 결 선 고 2022. 1. 13.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및 피고 D 사이에 2020. 10. 23. 체결된 각 소유권이전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 및 피고 D는 피고 B에게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0. 10. 23. 접수 E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하여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6. 12. 2.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9. 5. 8. 협의이혼 신고를 할 때까지 법률상 부부였고, 피고 C 및 피고 D는 피고 B의 부모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이 협의이혼 후 동거하던 중인 2020. 10. 11.경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예금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당시 원고는 위 피고에게 ‘그래 여보. 돈 입금해줄게. 빚 정리 다 해. 그리고 당신이 돈 벌면 나 줘야 해. 너랑 나랑 적금 통장 둘 이름으로 만들어서 절대 배신하는 사람이 갖는 거야1)’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B은 ‘영. 괜찮네. 어’라고 답하였다.

다. 위 송금2) 후 원고와 피고 B은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2020. 10. 21.경 원고가 피고 B에게 ‘오늘 엄마 수술날이니깐 돈 2,500만 원 입금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 B은 다음날인 2020. 10. 22. 원고에게 50만 원을 송금하면서 ‘B 전 재산’이라고 기재하였다.

라. 피고 B은 그 다음날인 2020. 10. 23.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및 피고 D에게 2020. 10. 23.자 당사자거래이전(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다.

마.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으로는 위 자동차 외에 예금 잔고 약 297만 원,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7호증, 을 1,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7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고 상당기간 반환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위 돈을 채무변제에 쓰라고 증여하였으므로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룬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원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이를 수취하는 사람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증여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등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인정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700만 원은 오로지 피고 B의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와 피고 B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비추어 송금금액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송금시점은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해소된 이후로 안정적인 관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B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 9.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로부터 위 돈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녹음을 취하기도 하였는데(을 2호증) 그보다 더 거액인 2,7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B에게 무상 공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특히 원고가 송금 당시 피고 B에게 ‘당신이 돈 벌면 나 줘야 해’라고 하는 등 위 돈을 피고 B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기보다는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해석되는 점 등 송금경위나 목적, 송금금액 및 사용용도,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B에게 송금한 2,700만 원은 위 피고에 대한 무상 공여가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90만 원을 뺀 대여금 2,41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1.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은 2020. 9. 10. 원고에게 변제기를 2020. 12. 말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의 요구로 녹취서와 같이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녹음하였으나 실제로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800만 원의 변제로 1,000만 원을 수령하고 차액을 이미 반환하였으므로 피고의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 B이 2020. 9. 10.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원고가 위 돈이 차용금이고 2020. 12. 까지 피고 B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녹음해 준 사실(을 2호증)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7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2020. 7. 24.경 피고 B에게 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20. 9. 10. 위 1,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20. 9. 12. 피고 B에게 200만 원을 다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및 금전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1,0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이전계약 전에 성립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 양도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2)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부모인 피고 C 및 피고 D에게 이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위와 같은 이전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에게는 사해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채무자인 피고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 및 피고 D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및 피고 D 사이의 이 사건 각 이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C 및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B에게 대전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20. 10. 23. 접수 E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하여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영

별지

1)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갖는 거야’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 B은 원고가 2,700만 원을 송금한 당일 (채무를 확인해 보니 2,500만 원이라는 취지로) 바로 원고에게 200만 원을 반환하였다.